

東北亞 經濟圈 形성과 南北韓 경제협력 모형

李相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자료는 지난 8월 18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연구원 주최 국제심포지움에서 발
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편집자註〉

I. 머리말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은 지역별 경제블록화와 아시아경제권의 급속한 부상을 들수가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는 美國, 독일, 日本 중심의 경제 3극화현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1992년 이후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EC경제권과 소련 및 동구를 포함하는 동구 경제권, 그리고 美國, 캐나다, 멕시코 등을 포함하는 北美자유무역경제권, 남북한과 日本 및 中國의 동북지역과 소련의 원동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권으로 블록화되는 추세에 있는것 같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내에서도 中國과 러시아가 신데탕트무드를 타고 적극적으로 동북아경제협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동북아경제권을 구성하는 남북한, 日本, 中國, 러시아 등은 산업구조면에서 상호보완성이 커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호혜적 경제협력과 수직적 분업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현재 中國의 동북3성(흑룡강, 길림, 요령성)과 러시아의 원동지역의 개발화와 함께 中·러시아 양국의 태평양 경제권 진출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관문으로 여겨지는 소위 황금의 3각지대(Golden Triangle)라고 불리는 두만강 하구의 개발노력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권의 성립은 이제까지 거의 쌍무적 관계로 일컬어 왔던 동북아경제관계가 다자간 경제관계로 전환됨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동북아 경제권에의 남북한의 동시 참여는 역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동안 많은 제약

을 안고 있던 남북한간의 직접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내부 상황변화 역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남한의 경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방정책의 추진과 경제력 향상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전사회적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대화 및 협력관계의 상대로 인식하도록 바꾸어 놓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열망과 민족경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도 주체사상을 내세워 폐쇄적 대외정책을 고수하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큰 정책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연방의 붕괴, 사회주의 국가간의 경화결제를 통한 무역방식의 전환 등 여건의 변화는 북한경제의 개방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 바 남북한은 지난해 9월 UN에 동시가입을, 12월에는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회담에서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3월 교류협력 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5월에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은 본궤도에 진입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차원의 간헐적 교류에 머물렀던 남북경협이

당국간 합의를 토대로 올해엔 합작투자 자원공동개발등에 이르기까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발효와 함께 급속히 가시권 안으로 당겨진 통일에 대비하는 작업은 이제는 구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 발전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권형성 전망과 북한경제의 개방전망 및 남북한간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동북아 경제권 형성 전망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은 이 지역 천연자원의 부존상태나 국가간 산업구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원동지역과 中國의 동북 3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 中國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금 및 기술, 그리고 남한의 경제개발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모두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결합될 수 있을 때 이 지역의 경제가 무한히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상호보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이 아직까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국제적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하에서 동북아 지역도 새로운 국제관계가 모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경향과 舊 소련의 체제전환, 中國의 지속적인 개방과 개혁의 추구,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노력등은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시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권형성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첫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의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내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로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장에서는 동북아 경제권 구상과 동북아 경제권 구상의 첫 가시화된 계획인 두만강유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계획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북아경제권 구상

中國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은 흑룡강성 하얼빈을 주축으로 하여 옛 만주땅인 동북3성과 내몽고 자치구, 양자강 3각지구까지 포함하는 中國의 동해안,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연해주), 한반도의 남북한, 日本열도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상호경제교류 가능성을 시험할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권역에 포함된 나라들의 면적은 총 9백만km²에 인구는 약 2억 3,000만명에 이르게 된다. 또한 日本, 韓國, 中國, 러시아 등은 경제발전의 정도에서 상당한 보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비교해 보면 보완성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日本 등의 자본 기술이 시베리아, 만주 등의 천연자원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日本은 그동안 누적된 무역흑자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면에서도 세계최첨단을 달리고 있으므로 日本의 결심여하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개발은 상당한 속도로 전진될 수 있다. 한국도 어느 정도 해외투자 능력이 있으며 특히 열악한 조건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中國은 1985년 9월 요령, 흑룡강 등 동북3성과 내몽고 자치구 동북지역을 포함하는 동북경제구를 설정하였는데 발해·흑해 개발계획과 동북경제구 설정, 환발해경제구 설정 등은 中國의 동북아경제권 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향후 경제권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두만강유역 개발 문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 中國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 하의 국제학술 세미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中國측은 中國의 길림성 방천지역에 항구를 건설하고 훈춘을 통하여 中國 내륙과 유럽으로 철도가 연결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송상의 비용절감방안과 두만강 유역 中國·러시아·북한 3국의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한국과 日本의 자본과 기술 제공하에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UNDP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의 장기적 목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북한, 中國,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문제이며 둘째는 이 지역을 자원가공 및 제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발목표가 이루될 경우 두만강지역은 흥

콩과 같은 지역경제권의 중심지로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두만강지역이 동북아지역의 교통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일본이나 남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中國 횡단철도와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으로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때 한반도의 동해안이나 日本의 서해안 지역으로부터 유럽지역으로의 수송이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수송거리도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두만강지역을 통한 동해로의 출구확보는 中國 동북지역의 대외교역을 크게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올란바토르에서 장춘을 거쳐 두만강지역을 연결하는 수송로가 완성되면 몽고의 동부지역 개발이 매우 용이해질 것이다.

한편 두만강지역을 동북아의 자원가공 및 제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목표는 러시아 원동지역의 풍부한 수립·지하·해양자원과 中國 동북부의 지하자원과 농업생산물 그리고 북한의 광산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이나 日本의 기술과 자본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이나 기술 및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 있어서도 국가간 상호보완성이 확인된다. 즉 러시아 원동지역의 경우 광대한 국토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희소하여 인구밀도는 km당 2.7명에 불과하나 인근 中國 동북성과 북한은 각각 83명과 270명으로서 천연자원과 인력의 결합을 통한 경제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이나 남한이 겪고 있는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은 두만강지역의 투자유치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두만강지역을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개발 목표에 부가하여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두만강지역의 개발은 동북아지역의 국가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두만강개발을 위한 관계국의 활발한 접촉은 中國의 훈춘이나 북한의 나진·선봉등에 대한 대외적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 국가간 교역이나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정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각종 투자유인제도, 그리고 출입국과 관련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국들은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해 자국의 이익과 개별적 특수성에 바탕을 둔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

북한은 1991년 말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

정하며 청진항을 자유무역 항으로 지정하여 개항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나진·선봉 일대는 소위 두만강지역의 소삼각시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선봉군의 북동부는 中國 및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이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고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中國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개발계획을 제시한 이후라고 하겠으나 일단 발표된 계획의 실행은 인접국들보다 서두르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대해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中國이나 러시아의 경우 개발계획의 참여주체가 지방정부인데 반하여 북한은 중앙정부가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새로운 도시지역을 형성하여 인구를 장기적으로 75만~100만명으로 확대 함으로써 이 지역에 입주하는 제조 및 가공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며 항만시설의 대폭적 확장, 철도의 전철화구간의 확대 및 복선화, 기존도로의 확충과 고속도로의 건설, 통신시설의 투자 등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은 외자유치를 통한 제조·가공단지의 조성과 함께 中國이나 러시아의 화물을 취급하는 수송통로로서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은 이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에도 관심을 두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무역 및 금융부문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위해서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은 주로 철도,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장계획에 국한되어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나 자금조달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될 「소득세법」, 「합작법」, 「계약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현재 초안단계를 거쳐서 외국의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 있으며 금년 말 이전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지정이 中國의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개발에 자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中國과는 투자유치에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며 또한 기존의 합영법이 가지는 제약적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中國의 경제특구 관련제도나 북한의 기존 합영법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들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中國의 훈춘지역 개발계획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내 중요도시인 훈춘은 종종적이 경기도의 약 반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으로서 동으로는

러시아의 濱海변경구와 서남으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각기 접해 있어 中·러·북한 3자간 경계무역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동쪽끝인 방천은 두만강 하구 15km 둑미쳐 위치해 있어 中國 동북부의 동해 출구는 그 곳에서 막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中國의 훈춘지역 개발은 곧 두만강 개발로 접약될 정도로 두만강 개발 구상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두만강 개발이 그 지리적 특성 상 러시아 및 북한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中國은 훈춘지역의 개발을 中國과 러시아 및 북한의 공동이익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공동개발계획과 연계시켜 구상하고 있다.

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1) 두만강하구의 본격적인 항구개발과 이의 자유무역항으로의 전환
- (2) 훈춘지역내 또는 인접지역인 3개국 접경지역내에 자유무역지대 설치
- (3) 훈춘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인접도시와 북한의 인접도시등 3자를 연결하는 3각형의 국제경제협력지대 구축 등이다.

이들은 상호 밀접히 연계된 하나의 장기적 종합개발계획 구상으로서 특히 두만강 개발을 기초로 한 주변 3개국들간 3각경제협력지대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동북아경제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시키겠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소위 「黃金의 3각」(Golden Delta)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3각형의 경제협력지대 구축은 다음의 두 단계로 구상되고 있다. 첫단계인 「小三角」지대의 구축은 中國의 훈춘시, 북한의 선봉 및 러시아의 포세트(Posset) 항을 상호연결시켜 공동개발해 나아가되 점차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역화 시킨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인 「大三角」지대의 구축은 범위를 더욱 넓혀 中국의 연길, 북한의 청진 및 러시아의 나홋도카를 연결하는 것으로 「小三角」을 기초로 한 개발효과가 이들 3개국의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中國은 이 지역의 방대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이 선진 기술 및 자본과 적절히 결합될 경우에 이 개발 구상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최적공급자로서 한국과 日本을 상정하고 있다.

1988년 경제개발구로 지정된 훈춘지역은 동북아 장기 개발전략의 거점이 되었으며 中國정부는 최근 발전시설, 철도, 도로건설등 사회간접시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규모는 연간 100%씩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훈춘지역을 소위 「북방의 심천」으로 건설하겠다는 中國의 훈춘개발계획은 15~20년의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

고 이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1989~90년)는 준비단계로서 개발구계획의 수립과 설치, 관련법령 및 조례의 제정과 실시, 훈춘시의 확대 및 대외홍보 등이 주요 사업목표로 되어 있다. 2단계(1991~1994)는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로서 기초시설의 건설, 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실시, 항구건설계획의 수립과 실시, 수출상품 가공구와 자유무역구 등 경제소구 건설의 기반조성 등이 계획되고 있다. 3단계(1995~2000)는 본격 발전단계로서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의 효율성 증대, 경제소구 및 모든 개발구의 「三資」(즉 외국인 단독투자, 자본합작투자 및 기술합작 투자 등) 위주로의 운영, 대규모의 항구무역개시, 자본 및 기술집약형 상품위주의 생산구조 구축, 지능산업의 육성 등이 주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개발계획의 성공여부는 외자와 기술의 유치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5. 동북아경제권과 남북경제협력

동북아경제권의 성립은 이제까지 거의 쌍무적 관계로 일관해 왔던 동북아 경제관계가 다자간 경제관계로 전환됨을 의미하므로 동북아 경제권내에서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한은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동북아경제권에 편입됨으로써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개혁과 개방을 유보하고 있는 북한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우방국인 中國과 러시아가 동북아경제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참여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단계에서 中, 러시아 등 동북아국가들은 이들 지역의 개발을 위해 남한으로부터의 개발기술과 자본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나진·선봉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과 함께 남한의 투자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의 개발이 구체화되면 다자간협력이 적극적으로 견토될 것이므로 동북아의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남·북한의 직간접교역의 추진은 물론 각종 산업면에서의 협력 및 합작 역시 실현될 것이다. 이와같이 동북아 경제권에의 남북한의 동시 참여는 역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간의 직접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남북한의 동북아경제권에의 공동참여에 대한 방안과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의 남북한 합작사업에 대한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경제권내에서의 中, 러, 日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연계추진은 남북한간의 직교역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북한경제의 개방전망

1. 북한 경제의 침체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는 경제개발전략아래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목표로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을 실시중에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93년까지 국민소득을 연평균 7.9%씩 성장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표1〉

〈表 1〉 북한의 경제계획추진

경 제 계 획	
1945-46	정비기
1947	제1차 1개년계획
1948	제2차 1개년계획
1949-50	2개년 계획
1951-53	韓國전쟁
1954-56	戰後復舊 3개년계획
1957-60	5개년계획
1961-70	제1차 7개년계획(3년연장)
1971-76	6개년계획
1977	조정기
1978-84	제2차 7개년계획
1985-86	조정기
1987-93	제3차 7개년계획

그러나 실시 5년을 맞이하는 지금 북한경제는 과중한 군사비부담, 폐쇄경제체제로 인한 자본 및 기술부족, 물적유인 결여에 따른 주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등으로 인한 경제운용의 실패로 경제성장률은 계획치에 훨씬 못미쳐 1987년 3.3%, 1988년 3.0%, 1989년 2.4%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북한경제가 구조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북한경제의 침체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생활필수품의 부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북한주민의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와같은 구조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시도된 합영 및 합작사업도 부진하여 합영법 제정이후 합작사업 실적 140건중 서방자본주의 국가와의 합작전수는 모두 5건 밖에 되지 않으며 합영공업부를 폐지하고 대외경제사업부로 기능을 흡수 통합해버린 90년도에도 합영유치사업이 고작 4건밖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합작사업실패의 요인으로서는 외국기업의 북한진출시 이윤보장이 불확실하

며 기업경영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등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개혁개방의지의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은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으로서는 북한경제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폐쇄 경제노선을 들 수가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폐쇄적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에 제약조건으로 작용 거의 전 산업부분에 걸친 기술수준의 낙후와 생산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했다. 둘째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북한의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경제운영방식은 북한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한 주요요인으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산업부문간에 불균형을 들 수가 있는데 북한은 군수산업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한 결과 경공업 및 농업부문의 발전이 저연되었으며 에너지·운송등 사회간접자본의 만성적인 애로를 초래하였다.

2. 북한경제운용의 변화

북한도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타개를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책운용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개방화의 조심스런 추진과 경제관리체제의 합리화 노력을 들수가 있다. 개방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합영법제정(1984년) 및 무역확대정책을 들 수가 있으며, 경제관리체제의 변화로는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공업 및 서비스부문 육성정책, 기업의 부분적인 독립체산제 도입등을 들 수가 있다. 최근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부진〈표2〉으로 생필품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경공업 육성 3개년 계획(1986년 6월)의 추진 및 지방공업부를 신설(1989년 9월)하는 등 주민 생활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외선전, 외화획득을 위해 개성, 원산, 혜산 및 금강산, 묘향산지구를 외국인 관광코스로 집중개방하는 등 경공업과 관광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1984년 합영법이 제정된 후 소련, 중국, 일본과의 합작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우선시켜 온 북한이 적극적으로 표면화하고는 있지 않지만 물질적 유인의 폭을 소폭적이나마 넓히고자 시도하고 있는 바 이런 조처로써 농민 상설시장의 확대, 소비재 생산부문의 능력별 임금제 실시, 공업

〈표 2〉

北韓의 연평균 경제성장을

(단위 : %)

	제1차 7개년계획 (1961-67)	6개년계획 (1971-76)	제2차 7개년계획 (1978-84)	제3차 7개년계획 (1987-93)
목 표	14.6	10.3	9.6	7.9
실 적	8.6	6.0	4.5	3.0

주 : 1988년 추정치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기업소 경영의 독자성 부여, 물질적 유인제도의 실시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경제운용체제의 변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 종래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방화로의 정책변화라기 보다는 경직적 경제체제로 인한 구조적 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변화를 어느정도 진행 시킬것인가 하는 것은 대내외 개방의 촉진요인 즉, 북한경제 침체의 심각성과 북한주민들의 생활 향상욕구등 대내적 요인과 중, 러시아, 日本등과의 관계변화 및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등 외부의 여건 변화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3. 북한경제의 개방 전망

북한경제의 침체와 소연방의 붕괴, 中國등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고립화와 대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채의 미지급 문제와 함께 사회주의권내의 무역관행의 변화 역시 북한의 경제 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기술 및 자본설비의 도입을 위한 외자도입이 북한경제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외채의 미지급으로 인해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선이 차단되고 있고 이로인해 대일 수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구상무역 형태를 취해왔던 中, 舊소련 등 사회주의권내의 무역이 현금결제(경화결제 : Hard Currency)를 통한 무역방식으로 전환된 것과 대외거래의 5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소연방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소연방의 붕괴는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 현 북한의 원유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요 원유 공급원인 소연방(40%)의 붕괴로 인한 원유공급의 감소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 북한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의 저하와 짐증하는 주민생활 향상욕구의 타개 필요성, 동구권에

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과 개방의 일반적인 추세, 무역관행의 변화 및 소연방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부담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고수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자립적인 민족경제 건설을 추진한다는 기본노선때문인데 이러한 기본노선 하에서는 북한의 개혁이나 개방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제개혁이나 개방은 불가피하게 체제불안을 초래 할 것임으로 위험시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예는 中國의 천안문 사태나 동구권의 개혁, 소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체제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방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이러한 개방 촉진요인과 개방저해 요인중 어느것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개혁 개방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개혁과 개방을 억제하는 정치적 요인이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경제적 요인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표 3〉

IV.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모형

이질체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통일비용의 크기는 통합방식, 양체제의 발전단계, 상대적 경제력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동서독의 예를 통하여 볼때 일반적으로 통일 비용의 크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통합의 경우나 급진적 방법에 의한 통합의 경우 보다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쌍방 통합의 경우가 이질체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다. 이경우 통일비용의 크기도 적어질 것이며 통일비용의 조달도 어느 일방이 아닌 양측이 함께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 이런 경우 한쪽에 지나친 부담이 가중되는 경제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추진방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흡수통합이 아니라 상호협의와 계획

〈표 3〉

北韓의 경제개방화 추이

年	内 容	備 考
1972 - 74	대서방교역 확대기	對 OECD수입이 총수입의 51.7%로 증가
1979. 1	대외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언급	金日成의 신년사
1980	1980년대 말까지 수출액의 4.2배 증가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1984. 1	향후 5-6년 사이에 대사회주의권 무역의 10배 확대 및 대외경제 협력 대상으로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을 거론	최고인민회의
1984. 9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의 공포	선진자본·기술의 도입 노력
1987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무역액의 증가목표 3.2배로 설정	제3차 7개년계획 발표
1991. 8	'나진·선봉지역 경제무역지구개발 구상' 발표	

資料 : 한국개발연구원

하에 통합의 여건조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양체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형평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최적 혼합체제로의 체제조성을 통한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경제통합은 이질적 체제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서독 등 이질체제 간의 경제통합과정(표 4, 5)을 살펴볼 때 향후 남북한간 경제통합과정은 간접교역→직접교역→경제협력→경제통합의 형태로 단계별로 추진하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전략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의 여건조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일시에 모든 면에서 경제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의 접근방법으로는 먼저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의 실적을 착실히 쌓아갈 필요가 있다. 간접교역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직접교역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무역협정의 필요성이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단계는 직교역의 단계로서 남북한이 이 단계에서는 무역협정하에 물자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 할 수 있

〈표 4〉 동서독간 교류, 협력형태 변화

	년도	내용
1단계	1951	내독무역
2단계	1970	통신, 교통교류
	1972	인간교류
	1975	환경문제 공동해결
	1976	광물채광
	1979	문화교류
	1982	민간단체교류
	1983	차관공여
	1987	과학기술협력 환경보호협력 문화교류협력
3단계		

을 것이며 직접교역의 후기에 와서 경제인, 기술자들의 인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증진시켜 다음 단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질체제간의 경제협력방안은 첫째, 외화획득을 위한 지원협력 방안, 둘째, 산업협력방안과, 세째, 합작투자방안, 네째,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건설방안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 바, 초기에는 외화획득협력 등 상호 편의제공단계를 거쳐 수직적 분업체제를 이루는 산업협력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산업협력 다음으로는 남북한이 합작투자를 하는 단계로서 초기에는 자본과 기술협력을 위한 장단기신용차관의 제공단계에서 시작하여 경공업 및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합작 또는 직접 투자하는 단계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 단계를 거쳐 남북한이 사회간접자본을 공동으로 건설, 이용하는 경제협력의 성숙기인 공동사업단계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외화획득의 지원협력에 있어서는 수출입업무의 대행이나 각종 용역을 염가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수직적 분업체제를 이루는 산업협력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북한 원자재 및 남한에서 제공하는 원자재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임가공후 다시 남한에 수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위탁생산 및 하청, 부품조달 등을 통한 산업협력 이외에도 자본과 기술의 제공이 수반되는 공정간 분업이나 제품차별화 분업 등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합작투자는 자본가 기술협력에 있어서 장단기 신용차관의 제공단계에서 시작하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제품이나 광물자원이나 수산자원 또는 관광자원에 대한 공동투자 등이 있을 것이다. 이중 관광자원 개발의 경우 특히, 금강산 공동개발문제는 이미 합의 된 바 있으며

〈표 5〉

동서독 경제교류의 형태별 내용

	내용	경제적 차원	구조적 특징	기관과 양적측면
1. 무역	상품거래, 서비스, 구상무역 및 대공업 프로젝트	1차원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유효한 규정속에서 한번거래	상업적 성격으로서 체제 종립성	최초에는 ad hoc 베이스 50년대 중반부터 교역협정에 의해서 무역량의 80-85% 정도
2. (생산면에서) 협력	가공생산, 면허생산(위탁생산) 공동생산, 제3국에서 공동제조	2차원적, 수직적 협동 (기술이전등)	산업분야에서 협력 : 기업간의 특정생산제조 관계, 체제동조적	60년대 초기부터 존속하는 무역 협정에서 무역량의 7-10% 정도
3. 합작투자	Joint Venture ¹¹⁾ 형태로서 서구쪽이 49%	3차원적,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연구적) 협력 (기술과 생산에서)	국제분업체제 : 동구체제에서는 신요소	70년대 중반부터 특별한 규정, 협정 위에서 무역량의 2-3% 정도

주) 여기서 Joint Venture는 두파트너가 새로 설립하되 정부(국가)는 아무런 간섭이 없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임.

관광은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이며 동시에 외화 획득에 있어서 가장 쉽고 가득을 높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공동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지하자원 개발도 주요 외화획득원 중 하나이며 우리의 원자재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상호 실익을 줄 수 있는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원의 공동개발 사업은 희망기간이 길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건설 및 이용을 위한 공동사업으로는 전력, 도로, 철도 및 통신사업 등을 들 수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통합은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위한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의 신의주까지의 연계 및 공동관리는 경제통합을 위한 상징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합작투자 등 자본 기술공여가 되는 경제협력의 후기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진행된 경제교류를 경제전반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제회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협력은 여러분야에서 동시에 전개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추진의 궁극적 목적이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여건조성에 있다고 할 때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경제교류협력의 최종단계로서 동서독의 통합과 정과 EC등 지역경제통합의 사례 등을 통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점진적 단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추진방향은 예를 들면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처럼 남북한간에 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문을 선정 부문별 경제통합을 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대한 수량적 제한조치를 제거하는 자유 무역지역의 실현단계와 이보다 진보된 형태인 역외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을 채택하는 관세동맹의 단계를 거쳐 남북한공동시장(Common Market) 형성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별도의 경제주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대외경제활동을 수행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협력 형태를 이루며, 시장의 상호개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단일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의 단계로부터 인력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실물경제통합의 단계(경제동맹)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일통화가 창출되고 공동체 중앙은행이 설립되며, 남북한간 경제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통화통합(통화동맹)이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상호협의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점진적 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과도기적으로는 이질적 체제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 측면에서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막대한 내수시장 창출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 통합의 단계별과정을 도표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모형

단계		내용	
여건조성기	경제교류	1. 간접교역 단계	○ 제3국을 통한 물적교류 ○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경제협력기	2. 직접교역 단계	○ 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물적교류 ○ 후기 : 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
		1. 상호편의 제공단계	○ 수출입업무 대행등 외화획득 지원
		2. 산업협력 단계	○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
	통합기	3. 합작사업 단계	○ 초기 : 장단기 신용차관 제공 ○ 후기 : 경공업 자원개발에의 직접투자
		4. 공동사업 단계	○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통신시설)등 공동건설, 공동이용
	남북연합기	1. 부문별 경제통합	○ 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 선정 (예 : 철강, 석탄)
경제통합기	경제통합기	2. 자유무역 지역형성	○ 관세 철폐, 무역제한 철폐
		3. 관세동맹	○ 공동관세 정책
		4. 남북한 공동시장	○ 시장상호개방 ○ 상품별 생산요소 자유이동
	통일국가	5. 경제동맹	○ 인력,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
		6. 통화동맹	○ 단일통화창출 ○ 경제정책 통일 ○ 공동체 중앙은행 설립
		7. 사회동맹	○ 노동관계 ○ 사회보장제도 통합
통일국가			

V.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 및 문제점

1.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과 정부의 대북경제교류허용 방침 이후 우리의 남북한간 경제교류정책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북한물자의 반입과 경제인의 방북 등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교역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다. 92년 5월 말까지의 남북교역승인실적은 모두 679건 3억 8149만 6천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북한물자의 반입은 88년에 4건 103만 7천달러, 89년 57건 2223만 5천달러, 90년 75건 2035만 4천달러, 91년 328건 1억 6599만 6천달러, 그리고 올 들어 5개월간 151건에 8415만 1천달러 규모였다. 이에 비해 북한으로 반출된 남한산 물자는 89년 1건에 6만 9천달러, 90년 4건에 473만 1천달러, 91년 40건에 2617만 6천달러, 올해 19건에 674만 7천달러를 기록하여 북한산 물자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표7). 남한이 반입한 품목은 열연코일, 아연괴, 무연탄, 철강재, 시멘트, 전기동, 감자, 냉동명태, 마른 오징어, 생사 등 철광류와 농수산물이 주류였고 북한으로 반출된 품목은 직물 양말제조기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 많았다.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의 추이를 통하여 볼 때 남북한간 경제교류 특징은 경제교류가 주로 교역 즉 물자교류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양측간에 논의는 있었으나 성사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의 물자도입은 모두 직접교역이 아니라 제3국인이나 해외교포가 중개하는 간접교역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교류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물자교역에 있어서도 아직은 주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991년 들어서부터 간접교역이나마 남북간 교역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1991년 3월 남한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 시멘트를 직교역하기로 합의한 이후 몇 건의 직교역이 성사된 것은 남북경제교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2.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첫째, 북한의 개방속도를 들 수가 있는데 북한 주변의 정치정세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방의 필요성은 높으나 개방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충격 때문에 북한의 개방추진 속도는 느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성급한 경제협력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간에는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공식협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체의 불안감이 높으며 분쟁 발생시 신속공정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세째, 무역상의 문제점으로 북한의 외한부족으로 인해 바터제나 대응구매 등 구상무역의 요구가 높으나 적정한 거래 대상 품목을 찾기가 어려운 점으로써 북한의 상대적으로 적

<표 7>

연도별南北물자반출입 승인현황(88. 10~92. 5)

	연도	건수	상사수	품목수	금액(천 \$)		연도	건수	상사수	품목수	금액(천 \$)
반	1988	4	4	16	1,037	반	1989	1	1	1	69
	1989	57	47	53	22,235		1990	4	4	4	4,731
	1990	75	60	88	20,354		1/4	4	4	9	10,320
	1991	1/4	59	46	34,666		2/4	3	2	3	1,964
		2/4	64	48	33,566		3/4	4	3	12	55
		3/4	92	59	46,939		4/4	29	7	34	13,337
		소계	113	80	50,885		소계	40	16	58	26,176
입	1992	1	45	25	24,108	출	1	2	2	1	1,444
		2					2	10	5	2	3,506
		3	40	24	16,897		3	5	3	5	1,417
		4	43	32	20,167		5	2	2	2	380
		5					소계	19	12	10	6,747
		소계	151	99	84,151		합계	64	32	73	37,723
	합계	615	443	467	293,773		총계	679	475	540	381,496

자료 : 통일원, 「남북교류 협력통합」

은 수출입규모나 주요 수출품이 광산물, 수산물 등 1차산품인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간의 교역품목이나 교역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네째, 경제협력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투자의 경우 북한의 대외신용도가 낮고 서방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합영법의 규정이 애매하며, 북한의 국내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 노동력의 저생산성 역시 투자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확대에는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 등이 있으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며 이를 통해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익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급한 교역의 확대나 일방적인 경제협력 체의가 남북한 경제교류를 촉진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북한의 정치 현실과 남북한 경제무역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개방속도와 정치, 경제적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합리적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한 경제교류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일시에 모든 면에서 경제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교류는 북방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한편 우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방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교류의 한계성은 북방정책의 큰 태두리속에서 극복될 수 있으며 북방정책추진은 기존의 서방우방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조 관계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교류는 이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북방정책의 주대상이 되는 중, 소등 동북아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측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와 합의된 남북한 직교역이 그 후 미국의 의의 제기로 말미암아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등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세째, 남북한 경제교류는 조용히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한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북한의 외채 상환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용히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념과 체제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에는 꾸준한 인내와 협상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직교역의 성사나 금강산 공동개발사업 합의 등이 지나친 홍보로 말미암아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제고시켜 추진이 불확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네째, 정부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경제교류추진의 종합적인 틀을 만들고 이 틀속에서 체계적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무원칙한 정부의 경제교류정책은 기업들의 과당경쟁을 유발 궁극적으로 경제교류의 확대에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표 8〉

연도별 반출입 통관현황(1988. 10 ~ 1992. 4)

연 도	건 수	상사수	품목수	금액(천 \$)	연 도	건 수	상사수	품목수	금액(천 \$)	
반	1989	66	55	18,655	반	1989	1	1	69	
	1990	78	60	12,278		1990	4	3	1,187	
	1/4	48	35	13,583		2/4	2	2	1,448	
	2/4	69	46	26,602		3/4	1	2	1,607	
	3/4	84	48	38,339		4/4	20	13	2,492	
	소계	300	184	105,722		소계	23	16	5,547	
임	1992	53	21	10,156	임	1	3	3	890	
	2	20	16	4,112		2	2	2	308	
	3	31	18	6,582		3	9	4	2,186	
	4	18	9	5,006		소계	14	9	6	3,384
	소계	122	64	26,264		합 계	42	29	34	10,187
	합 계	566	363	162,919		총 계	608	392	368	173,706

자료 : 통일원, 「남북교류협력통합」

VII. 남북한 경제교류 실천방안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상호 보완성, 산업부분별 비용격차 등으로 그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제의 상이성 및 양측 지역의 특수한 대내적 정치 경제 현황이 교류 협력의 제약조건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건은,

첫째,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체제 논쟁이나 체제 간섭을 지양하고 민족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전 조성 단계로서의 정치성이 배제된 경제 교류 협력이 되어야 하며,

둘째,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당사자간에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협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교류 합의서 서명이후 양측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원활한 교역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교류는 확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직교역 활성화방안, 경제협력의 실현방안, 다자간 협력방안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1. 교역 확대 방안

(1) 기본적 접근방법 : 단계적 접근

남북한교역은 대외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국내교역으로 간주 부문별로 시작하여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간접교역 - 직교역 - 산업협력 - 합작 순의 단계적 접근방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교류 협력의 확대는 상호 보완적 경제 실익이 큰 부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남북간에 경제교류의 추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수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정하는 원칙과 절차의 테두리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교역방식 : 수평적 거래후 수직적 분업으로 전환

사회주의무역의 기본적 개념은 자주·평등·호혜의 무역 관계를 기초로 한 구상무역형태로 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하여 경제교류 및 협력의 동시 실현을 위한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교류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남한은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선물교류, 후경제 협력이라는 시차성 실시를 주장하며 기능적, 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교우위에 따른 수직적 분업과 객관적인 국제거래를 제의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수직적 교역형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무역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스스로 공업수준의 상대적 낙후를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역의 초기단계에서는 대등한 입장과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원자재는 원자재, 공산품은 공산품과 바꾸는 수평적 분업형태의 거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평적 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가 쌓인 후에는 현재 일본과 북한 사이의 거래처럼 우리나라가 소비재 중심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북한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대금결제방법 : 구상무역후 청산거래방식으로 전환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무역거래 초기에는 구상무역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시간이 지난 후 청산거래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소비재산업이 취약하고 의화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구상무역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상품을 북한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출대금의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 거래 초기에는 그들의 구상무역방식에 따라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경험이 쌓인 후에는 양측 중앙은행의 사후결제방식을 통한 청산거래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서독간 교역에 사용된 무이자신용제도(SWING 제도)의 채택이나 교역상의 적자를 보상해 주기 위한 장기무이자차관, 남한상품의 구입을 위한 장기차관 등의 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품거래의 경우는 청산계정만으로 충분하나 투자나 자본 용역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후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쪽 은행간 코러스 계약을 통한 일반은행 계정도 병행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결제방식과 관련 원활한 교역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등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환율결정과 물품가격 평가에 대한 문제등이 있다. 환율은 북측에서 공정환율과 여행자 환율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환율은 상대적으로 북한화폐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남북간 교역에 사용되는데는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환율 결정의 경우 동서독의 예를 볼 때 북한경제 상황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실세환율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물품가격평가도 국제시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서로간에 품목별로 국제시세와는 별도로 값을 정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가격을 우대할 경우 선진국등 교역 상대국 등과의 마찰도 초래 할 수 있어 앞으로 양측이 실무접촉을 갖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교역대상품목 선정 : 남북한의 수출입상품구조 파

악

남북한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역가능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수출입상품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서는 체계적인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남북한 모두 대 일본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대일수출입구조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가능품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전형적인 교역형태인 공산품과 1차상품의 교역을 기피할 것이므로 남한의 쌀, 김 그리고 북한의 무연탄, 명태 등 1차상품 위주의 구상무역형태로 직접교역을 추진하고, 북한이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생활필수품 등 소비재 중심의 공산품 또는 북한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상무역의 적정품목으로는, 과거 남북한경제 회담시 양측에 의해 제시된 수출입희망품목(표-9)과 북한의 대소련(구소련), 中國 및 日本과의 수출입 품목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품목으로는 무연탄, 철광석, 鉛塊, 선철, 시멘트, 亞鉛塊, 규사, 고철, 명태, 누에고치, 팔, 옥수수, 피마자, 수산물, 한약 등 주로 1차 산업품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대 북한수출품목으로는 철강제품,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이륜자동차, 시계, TV 수상기, 전기전자제품, 섬유산업제품, 의약품등 2차 산업 제품이 주가 될 것이며 이 밖에도 쌀 등 주요 곡물도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관세문제 : GATT의 예외규정으로 인정

남북한교역이 활성화되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 현재 내국간 거래로 인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남북간 직교역이 통상마찰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 남북한은 국제적으로 2국 2체

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직교역은 국가간의 교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북한상품의 반입을 내국간 거래로 간주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은 GATT(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제1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타무역상대국에게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의 특수사정을 회원국들에 설득 GATT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남북한 직교역에 적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합전 동서독간 교역은 FRANKFURT 협정에 의거 '독일은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간주 독일(동·서독)내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간주 관세 및 수입과정금 등 대외교역제한 요소 등을 배제하였다. 1951년 서독이 GATT에 가입시 회원국들의 최혜국 대우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951년 4월의 Torquay 의정서에서 동서독 교역은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설득 동서독의 교역을 국내거래로 인정받았다. 이와같은 독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동서독에 준한 대우를 받는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통신수송 및 통행문제 : 남북간 통신·수송의 연계 및 통행보장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통신수송시설의 연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통신시설의 경우 교류 첫단계에서는 교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수단인 전화나 텔레스를 남북한 지정당사자(예: 남북한 중앙은행간) 사이에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교류의 확대에 따라 통신시설 및 설치지역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남북한 우편, 전보, 소포, 전화등 통신분야 교류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많은 협약이 따르리라 생각된다. 수송의 경우도 남북간의 도로 및 철도의 연결과 해로의 연계가 필요한바 서울-신의주, 서울-원산간의 철도, 인천-남포간의 해로는 우선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로 및 철도연결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표 - 9>

남북한이 제의한 교역대상 품목

한국측 구입희망품목	판매가능품목	북한측 구입희망품목	판매희망품목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괴, 아연괴, 규사, 고철등 공업제품, 명태, 누에고치, 팔,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 기타 한약재	철강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미늄제품등 금속제품. 가정용, 공업용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2륜자동차등 기계류. 시계 천연색 TV, 음향기기등 전기전자제품.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등 섬유류, 기타 고무벨트 꾀아노, 황산가리, 정제그리세린 및 의약품.	철강제, 종석광, 납사, 섬유등 공업제품. 남해어족, 소금, 감귤등 농수산물.	철광석, 석탄, 마그네 샤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등 공업제품.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

자료 : 국토통일원

한 관할지역은 자체복구 및 건설하고 비무장지대내 시설은 공동건설, 관리하며 시설사용료, 하역비등은 별도의 청산 계정을 통하여 청산결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북한지사설치 혼가문제와 주재원의 신변보장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북한지역에서의 우리족 인력 활동의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벌죽될 교류협력분과위를 통해 남북통행협정을 체결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경제 협력실현 방안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한의 축적된 자본, 기술 및 노하우와 해외시장 기반을 바탕으로하여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 이를 통한 남북한 경제의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서로의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공업을 육성하고 생필품, 소비재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협작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간의 생활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세째, 북한의 외화획득원 분야에 투자를 지원해서 북한의 대외개방화 경제체계 형성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의 추진은 산업협력, 협작, 공동사업 등 단계별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투자보장 : 투자보장협정체결, 협영법 보완

현재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으나 투자보장에 관한 쌍방정부차원의 협정은 없으며 협영법을 비롯한 북한의 협작투자관계 법령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제교류가 교역단계를 지나 협작단계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투자안전장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보장장치가 없는 경우 대규모 투자의 경우 과실송금뿐만 아니라 원금회수 불능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협작투자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 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등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맷을 투자보장협정등은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와 체결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되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본 북한의 협영법의 보완을 통한 방법이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다.

(2) 남북합작사업의 대상 선정

남북한간의 협작사업은 자본과 기술, 자원과 인력등 각분야에서 남과 북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한간의 직교역의 경우

북한의 외화부족과 북한으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상품의 제약으로 인해 교역확대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의 협작투자가 더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근래 북한은 UNDP가 추진중인 두만강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협력해 외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협작투자에 큰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협작투자의 형태는 우리기업이 북한에 직접투자하는 방법과 북한과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방법등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협작사업대상은 지난 남북경제회담 당시 제안한 사업과 근래 협작투자를 유지할 목적으로 UNIDO와 협력 하에 선정한 11개분야의 해외투자유치 프로젝트(표-10)를 참고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협작투자대상으로는 직물 및 의류, 식품 및 농수산가공업, 요업공업부문, 전기, 전자부품, 화학, 조선 부문 그리고 광업, 기계공업의 일부 등 북한의 합작희망대상부문이 대부분 남한의 대외경쟁력이 높은 부문이므로 합작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협작대상은 투자보장장치가 불확실한 현상황에서 당분간은 북한의 합작희망부문중 우선 중소기업형의 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진출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이런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최근 수출증대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섬유, 의료부문과 식료등 경공업부문의 합작으로 시작하여 남북한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무연탄, 철광석, 비철금속 등의 지하자원개발부문으로 협작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같은 직접투자방법과 함께 북한과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방법 역시 실현가능성이 높은데 예를들면 現代나 大宇에서 추진하는 제3국의 사업장에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는 방법과 中國이나 러시아등 외국에 남북한이 공동투자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이다.

(3) 남북협력기금 : 기금규모와 지원대상확대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남북협력기금뿐이다. 이 기금은 남북한 주민왕래등 인적교류사업에 대한 무상지원, 교역 경제협력사업등 경제교류사업에 대한 손실보조, 응자, 채무보증 및 보조금지원,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대금결제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응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업무에 사용된다. 지원조건은 남북한교류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남한기업의 북한과의 거래손실 발생시 손실금의 90%까지 보조를 해주며 반출반입자금에 대한 대출 또한 계약금액의 90%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협자금의 대출의 경우도 연 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는 91년에 2백50억원, 올해 조성될 예정인 4백억원을 합쳐 올연말까지 모두 6백50억원으로 확충될 예정이며, 이중 지금까지 집행된 금

액은 20억원여가 된다.

기본합의서 채택후 남북한 직교역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경제협력사업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합작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외에는 남북경제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금확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지원대상의 확대문제인데 현재 동기금의 지원대상이 남한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경제협력사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면 간접교역 역시 지원대상여부가 불분명하다. 당분간 남북교역은 간접교역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협력사업 역시 직접투자보다는 제3국 법인명의의 간접투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접교역 및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경제협력사업도 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간접교류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남북경제협력기금으로 조성된 650억원은 부족하며 동시에 예를 통하여 볼 때 1조억원 이상의 교류기금이 향후 5년이내에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등이 있을 것이나 통일세의 신설등을 통한 기금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종합적 조정체제 확보 : 단계별 조정

협력사업의 주체가 남한은 민간기업이 되고 북한은 정부가 되는만큼 우리기업이 북한당국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나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는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교역 및 투자지침 마련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책임있는 조정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남북한 당국사이에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제도화 될 때까지 개별기업의 경쟁적인 대북한 접촉을 자체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과잉경쟁은 향후 경제협력공동위의 실천적 협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역대상, 투자대상, 사업주체등을 선정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사전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남북경제교류의 흐름을 경직시키고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능률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교류의 단계별로 정부의 개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협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교류전반에 걸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 직교역의 경험이 축적될 일정기간은 업종별 단체등 민간경제단체와 정부의 사전협의에 의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제도적 토대위에 남북간의 직교류의 경험이 축적되고 난 후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산유국동향 ■

OPEC 감시위, 9월 16일 제네바 개최 확정

OPEC의 13개 회원국 석유장관들이 9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각료급 감시위원회(MMC)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OPEC 대변인의 확인을 인용하여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OPEC 대변인은 이번 MMC에서 금년 4/4분기를 위한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생산수준결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 밖의 상세한 의제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OPEC 소식통들은 이번 MMC가 단기간내에(9월 18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OPEC 소식통들은 이번 MMC에서 현재의 실

질생산 수준에 부응하여 생산상한 중대를 요구할 사우디 등(2,450萬b/d의 생산상한 중대 희망할 듯) 회원국들과 현 생산상한 유지희망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6일의 MMC에 앞서 OPEC 경제위원회(ECB) 회의가 열려 세계 석유수급 상황의 검토 및 전망을 행할 예정인데, 고위 OPEC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라 OPEC 사무국은 ECB에 금년 4/4분기에 2,521萬b/d, 93년 1/4분기에 2,550萬b/d의 对 OPEC 석유수요 전망치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